

case  
8

##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 요약

사례명	<b>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b>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43543 (2024.10.31.)
사실관계	한국에서 제조된 절연 케이블 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절단, 테이핑, 단자 연결 등의 조립 공정을 거쳐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완제품으로 제작한 후, 다시 한국으로 수출하여 테스트 및 포장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의 경우 절연 케이블 도체의 기능이 제품의 본질을 구성하며, 중국에서의 공정은 단순 조립으로 실질적 변형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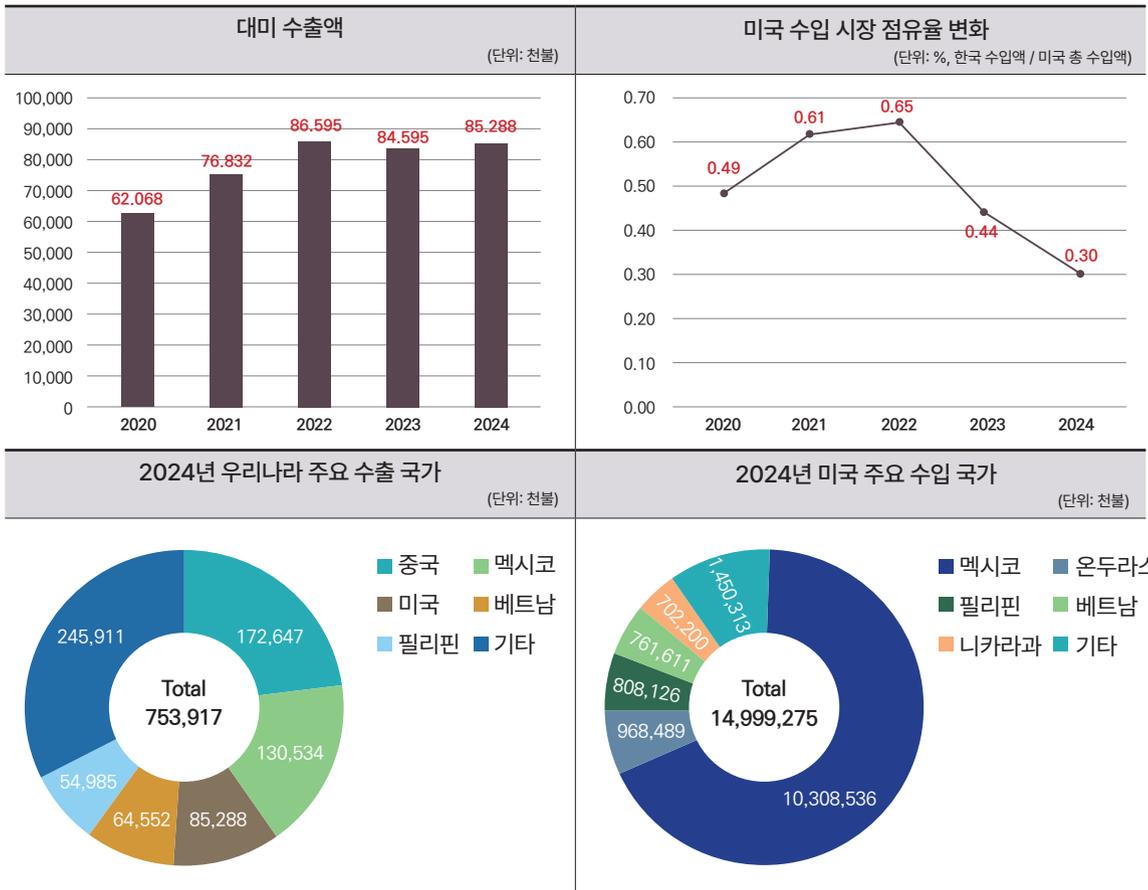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544.3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5%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시장정보

제8544.3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 례 명**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43543 (2024.10.31.)

**사실관계**

요청자	Hyundai Motor Company (대리인: SEIN Customs & Auditing Corp)	
제품	제품명	•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부품번호 39222-2S000)
	구성	• 절연 케이블 도체      • 커넥터 • 단자                      • 테이프 등
	용도	• 자동차 엔진룸 내 냉각 시스템을 통한 전기 신호 전달용
	완제품 HTSUS	• 8544.30.0000

제조과정



- 상세과정**
1. 한국에서 절연된 케이블 도체 제조
  2. 중국으로 수출
  3. 중국에서 아래 공정 수행
    - 절단 및 테이프 고정
    - 커넥터 및 단자 조립
  4. 조립 완료된 하네스를 한국으로 수출
  5. 한국에서 최종 검사 및 포장
  6.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의 판단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에 기초하며,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사례** 단순 라벨 부착이나 경미한 작업 후 미국에 수입된 향수 케이스

**판결** 제품의 본질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은 발생하지 않음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사례** 대만산 금속 부품이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었으나, 부품 자체는 완성된 형태로 수입됨

**판결** 미국에서의 조립이 새로운 기능, 구조를 창출하지 않았으며 실질적 변형은 아님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사례** 맥주 원액이 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에서 병입 및 포장됨

**판결** 제품의 정체성은 원액에 의해 결정되며, 미국 내 공정은 본질적 특성에 변화를 주지 않음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사례** 여러 신발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조립

**판결** 완제품인 신발의 본질적 기능이 외국산 부품(갑피)에 의해 결정되므로 미국에서의 실질적 변형은 인정되지 않음

판정 결과

☐ 본 사안에서 한국산 절연 케이블 도체는 완제품의 기능적 구성 요소(functional components)로서 제품의 본질적 성격을 부여하는 주요 부품임

- 반면, 중국에서 수행된 커넥터 부착, 단자 조립 등의 작업은 단순 조립으로 해당 케이블을 별도의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으로 변형시키지 않음

- 따라서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한국산 부품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최종 원산지는 '한국'으로 결정됨

결론

✓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의 경우 절연 케이블 도체의 기능이 제품의 본질을 구성하며, 중국에서의 공정은 단순 조립으로 실질적 변형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

### Ⅲ 시사점

- 커넥터 부착, 단자 조립 등은 단순 조립으로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며, 제품의 핵심 기능인 접속 및 전류 전도 기능을 담당하는 절연 케이블 도체가 어느 국가에서 제조되었는지가 원산지판정의 주요 기준임

### Ⅳ 참고자료

- CBP NY N343543 (2024.10.31.), <https://rulings.cbp.gov/ruling/N343543>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